

# 定 款

(주)GS 리테일

# 定 款

제 정 : 1971. 2. 13	개 정 : 1989. 2. 28
개 정 : 1971. 4. 1	// : 1990. 2. 28
// : 1974. 12. 20	// : 1991. 1. 3
// : 1975. 2. 24	// : 1992. 2. 28
// : 1975. 7. 10	// : 1992. 12. 24
// : 1976. 11. 10	// : 1993. 2. 27
// : 1977. 2. 26	// : 1994. 2. 28
// : 1977. 8. 31	// : 1994. 11. 1
// : 1978. 3. 8	// : 1996. 2. 29
// : 1978. 9. 2	// : 1997. 4. 28
// : 1980. 6. 25	// : 1997. 12. 17
// : 1980. 10. 2	// : 1998. 2. 28
// : 1981. 2. 26	// : 1999. 2. 27
// : 1984. 2. 28	// : 2001. 3. 29
// : 1985. 2. 28	// : 2001. 11. 29
// : 1985. 6. 26	// : 2002. 1. 15
// : 1986. 2. 28	// : 2002. 3. 18
// : 1987. 2. 28	// : 2002. 5. 30
// : 1988. 2. 29	// : 2004. 3. 18
// : 1998. 8. 23	// : 2005. 3. 2
// : 2007. 3. 22	// : 2008. 3. 6
// : 2008. 12. 19	// : 2011. 4. 25

//	:	2012.	3.	16	//	:	2017.	3.	17
//	:	2018.	3.	16	//	:	2019.	3.	15
//	:	2021.	3.	25	//	:	2021.	5.	28
//	:	2022.	3.	25	//	:	2024.	3.	21

## 정 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상 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이라 하고, 약칭으로는 주식회사 GS 리테일 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GS Retail Co.,Ltd 라 표기한다.

#### 제 2 조 ( 목 적 )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인쇄 및 출판업
2. 부동산 개발업, 임대업, 매매업, 중개업, 컨설팅업, 공급 및 분양 대행업
3. 빌딩 및 각종 시설 관리 용역업
4. 조립업 및 육립업
5.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 등  
관광객 이용 시설업
6. 음식점업(휴게음식점 포함)
7. 주차장업
8. 창고업
9. 회원제 숙박 설비운영업
10. 사업경영용역업
11. 신용카드업
12. 슈퍼마켓, 백화점, 대중양판점, 쇼핑센터, 편의점, 대형할인점사업 등  
종합유통업
13. 가맹점사업 및 체인사업과 주류중개업, 주류판매업
14. 공연장, 전시장, 교양강좌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문화사업
15. 헬스클럽, 수영장, 볼링장 등 각종 스포츠 경기장 설치 및 운영사업
16. 의료용구 ,기기 및 위생용품 판매사업
17. 음반, 비디오물의 제작, 판매 및 대여업
18. 자동판매기 운영업
19. 외식사업, 단체급식사업, 식당 위수탁 운영 및 식자재의 매매 대리업
20. 각종 접객 서비스업
21. 의류, 피혁류, 완구류, 식품류 및 기타 일용품의 제조, 임가공 및  
도산매업

22. 예식장 운영업
23. 농수축산물, 음식료품, 의복, 가구, 잡화, 기타 각종 상품의 제조, 가공, 유통,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
24. 각종 판매장비 및 인테리어 설계제작 및 시공업
25. 시장조사, 판로개척, 판매전략, 판매촉진에 관한 서비스업 및 경영위수탁업
26. 즉석식품류의 제조,가공,판매업
27. 교육, 연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과 교육서비스업
28.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업
29.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업
30. 담배 도소매업
31. 시설물 유지관리업
32. 소방시설 설계, 소방설비공사, 소방공사 감리, 소방시설 점검업
33. 용역경비업(시설경비업무)
34. 위생관리용역업
35. 건설업(설비공사업)
36. 전기통신사업, 통신정보 제공 및 용역업
37. 카탈로그, 컴퓨터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업
38.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구축 및 제품검사업
39. 전자상거래업
40. 빵, 과자류의 제조, 가공 판매업
41.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판매업
42. 식품, 식음료, 식자재의 제조, 가공, 운반, 소분, 판매업
43. 옥외광고업
44.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업
45. 건설공사 설계 감리 및 시행업
46. 제작 시설 및 기자재 등 렌탈임대업
47. 가상현실(VR) 기기 체험관 등 운영업, 가상현실(VR) 시스템/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
48. 주류수출입업
49. 배송대행업, 화물 운송 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 주선업 등
50. 통신판매중개업
51. 보험대리점업
52. 종합유선방송사업
53. 홈쇼핑 프로그램 공급업, 기타 프로그램 제작, 공급업
54. 이벤트, 연출대행, 기타 오락문화사업

55. 광고제작 및 대행업
56. 여행알선업 등 관광사업
57. 보석감정업
58. 이동통신기기 대리점업
59. 인터넷 복권 판매 대행업
60. 이사서비스 알선업
61. 택배, 배달 운송업
62. 결혼, 웨딩 알선업
63.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업
64. 인터넷 경매 사업
65. 인터넷 거래 중개업
66. 무형재산권의 중개, 알선 및 임대업
67.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제공업
68. 경영상담업
69. 국제물류주선업
7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71.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4. 자동차판매업
75. 상기 제품 등과 관련된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무역 중개업
76. 전 각호의 사업목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주소지)**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점을 둘 수 있다.

###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sretail.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한다.

## **제 2 장 주 식**

###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일주의 금액은 **금일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설립시의 발행주식)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만주**로 한다.

###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9 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 10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의 우선배당율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5%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그 율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율을 조정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누적적(어느 사업년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존속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 제 10 조의 2(상환주식)

- ① 회사가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는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 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 시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③ 회사가 발행된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상환한다.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 ④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 제 10 조의 3(전환주식)

- ① 본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과 동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발행 시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주권의 희석 방지를 위하여 전환가액 또는 전환비율의 조정조항을 둘 수 있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10 년 이내의 범

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삭제, 2021.3.25)

**제 11 조 (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단, 2 호 내지 6 호 및 9 호에 대한 신주배정은 각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로 합작투자선에게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전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술도입을 위해 그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9.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③ 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의 결의에 의한다.

**제 11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542 조의 3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의 범위내에서는 이사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는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 6 조의 7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는 기발행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기발행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본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⑧ (삭제, 2021.3.25)

### 제 11 조의 3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 12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 13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 제 15 조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5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후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전문 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삼천억원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이천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후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전문 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삼천억원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이천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사이에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삭제, 2021.3.25)

#### **제 16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17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2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주총회**

#### **제 18 조 (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9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1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2 조 (의 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결의방법)**

주주총회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 27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28 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9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 29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542 조의 6 제 2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 주 전에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추천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30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최종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 종료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② 사외이사는 1 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근속 가능한 최대 임기는 6 년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제 1 항 단서의 경우를 준용한다.

### 제 31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8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정관 제 28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2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각 약간명을 선택 선임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중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제 33 조 (대표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 운영에 대한 사항 및 각 대표이사가 분담할 담당업무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 결원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4 조 (집행임원)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제 35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 日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3.25)

### 제 36 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 398 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37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38 조 (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내부거래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ESG 위원회
  5. 보상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6 조 및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9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와 상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6 장 감사위원회

### 제 40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1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⑥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제 42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7 장 계 산**

#### **제 43 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 **제 44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비치)**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5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본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6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제 47 조 (삭제, 2012. 3. 16)**

#### **제 48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9 조 (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삭제, 2021.3.25)
- ④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제 50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제 8 장 부 칙

### 제 51 조 (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 제 52 조 (창업비)

본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본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 53 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본 회사의 발기인의 주소 성명은 다음과 같다.

1970 년 10 월 30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333-59	허신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292-35	구자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암동	237-7	윤옥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9	안동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10	김용승
서울특별시	성북구	변동	584-42	서정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100	김영준

**부 칙(2001. 11. 29)**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1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 년 1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1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30)**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 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2)**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6)**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 년 3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9)**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 년 12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2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6)**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5 조 및 제 15 조의 2, 제 36 조, 제 44 조, 제 47 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7)**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16)**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및 제 12 조, 제 13 조, 제 16 조의 2, 제 17 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2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0 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새로운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5. 2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회사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간의 2020년 11월 10일자 합병계약서에 따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 정관 제 29 조 및 제 40 조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는 본 회사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간의 2020 년 11 월 10 일자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하여 해당 합병계약서에 포함된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본 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된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의 법령에 의한다.

#### **부 칙(2022. 3. 2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 3. 2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